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상풍력발전사업 점용사용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사항 규정 >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45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상풍력발전사업 점용·사용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사항 규정	3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해상풍력발전사업 점용·사용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사항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상교통안전,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및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현행	개정안
<신 설>	2. 항공안전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신 설>	3. 군사작전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 시 관계 행정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 11.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의 장과의 구체적인 협의 범위나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공유수면에 대규모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안보나 어업인의 안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²⁾

-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 대한 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임.

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단계에서 안보 및 안전상의 위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로 침범이나 레이더 차폐 등 군사·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상 및 항공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법과 개별법 등에 규정된 사전 검토 절차들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2조³⁾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

2) 최근 부산 다대포·가덕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비행기 운항,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선박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KBS 뉴스, 「선박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재검토 촉구”」, 2026.02.27.)되었는바, 동 사업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하고 군작전성 검토 등 주요 조사 및 인허가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부산해상풍력발전, 「주요인허가 경과 및 계획」 <https://dadaepowind.com/page_tvgY19>, 2026.4.14. 검색)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을 하는 때에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⁴⁾, 해양수산부고시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으로 해상교통안전, 군사안보 등을 열거하고 있음⁵⁾.

또한, 「해상교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별법에서도 공유수면에 풍력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특히, 최근 제정·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6.3.26. 시행)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동 규정은 2022. 12. 27. 신설된 내용으로, 당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974)는 안 제8조제3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어업·선박의 항해·군사목적의 활용 등 기존의 해당 공유수면에서 행해지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물에 대한 입지기준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미리 수립하기 어렵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검토 절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제12조제1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국회사무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2.11.15. 참고)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13조의2(허가 등의 세부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3의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일부 발췌)

구분	세부 검토기준
해상교통안전 및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 항로, 정박지, 계류장 등의 구역과 중첩되는 등 항만 및 어항운영 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국가안보	· 관계 군부대 등 의견조회 결과, 군 작전·훈련구역 중첩 등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해상교통상의 안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안 수립 시에도 해상교통 안전성·군사작전 영향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공유수면에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 검토 제도 >

근거 법률	제도	관련 조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점용·사용 허가 기준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상교통 안전법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 <u>안전진단대상사업</u> ”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추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② 사업자는 <u>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해양의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u>

근거 법률	제도	관련 조문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작전성 검토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u>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공항 시설법	공항 인근 행위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제6항에 따라 공항·비행장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운영,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안 수립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향,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u>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

근거 법률	제도	관련 조문
		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u>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u> <u>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u>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5. 해양 환경성·해상교통 안전성·군사작전 영향성·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u>

□ 종합컨대, 이미 현행법령 및 개별법에 관련 검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와의 중복성이나 법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가 해상풍력발전설비 설치 시에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면,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이용에 관한 일반적·포괄적인 관리기준을 규율하는 법률로, 특정 사업(풍력설비)에 한정하여 별도의 협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과 타 사업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나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에 사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협의 내용은 해당 발전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고, 현재 점 용·사용 허가 전 협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기준과 내용 역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422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

구분	공유수면 관리청	피허가자	허가일	면적(㎡)	연간 점사용료(원)
1	영광군	영광풍력발전(주)	2016.12.23.	153,954	49,141,190
2	영광군	(재)전남테크노파크	2019.03.21.	63,893	감면
3	영광군	낙월블루하트(주)	2021.03.31.	27,436,789	954,616,040
4	영광군	전남개발공사	2023.07.24.	18,340	5,187,100
5	영광군	안마해상풍력(주)	2025.08.04.	114,906,354	189,124,528
6	영광군	(주)야월해상풍력	2025.11.12.	9,018,227	214,245,560
7	신안군	(주)압해풍력발전	2019.09.02.	186,284	62,349,610
8	신안군	전남해상풍력(주)	2022.07.01.	19,968,159	110,461,560
9	신안군	천사어의풍력발전(주)	2024.01.22.	4,899,535	124,786,290
10	신안군	신안어의풍력발전(주)	2024.01.22	5,088,908	126,071,880
11	신안군	한화오션(주)	2025.03.26.	68,768,720	247,219,760
12	부안군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	2016.03.04.	7,264,638	57,803,650
13	고창군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	2016.03.04.	8,625,107	74,966,870
14	고창군	동춘풍력(주)	2022.11.22.	10,791,436	116,498,790
15	제주시	탐라해상풍력발전(주)	2012.12.11.	81,062	70,257,920
16	제주시	제주한림해상풍력(주)	2019.11.27.	326,213	78,455,020
17	새만금개발청	더지오디(주)	2016.12.12.	263,178	329,798,260

* 각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및 취합('25.6.30 기준)

참고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의 세부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별표 3의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구분	세부 검토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	· 점용·사용의 목적 및 방법, 일반의 이용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점용·사용면적 및 기간이 적정할 것 · 점용·사용목적의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 건축물·인공구조물 설치의 경우 그 입지 및 배치, 규모·형상 및 구조가 적정할 것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용도구역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해양환경·해양생태계 및 자연경관	· 환경성검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환경성검토 대상 사업만 해당한다)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환경성검토 결과에 따른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 공유수면의 자연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상교통안전 및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구분	세부 검토기준
	· 항로, 정박지, 계류장 등의 구역과 중첩되는 등 항만 및 어항운영 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피해예방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국가안보	· 관계 군부대 등 의견조회 결과, 군 작전·훈련구역 중첩 등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어업피해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	·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조업량이 집중되는 해역의 어업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책·사업 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등에 현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것
기타	· 다른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제한 등을 위반할 소지가 없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상충되지 않을 것 · 건축물·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공유수면 형질변경, 침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른 점용·사용, 매립행위와 관련되지 않을 것 ·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 또는 인근 토지를 이용·통행하는 것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